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한명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제15조제2항에 “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”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